

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앞의 "제1장 총칙"을 삭제한다.

제1조 중 "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와"를 "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"로, "소방용수·지리조사"를 "소방용수시설·지리조사"로, "그 목적"을 "목적"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"을 "소방공무원"으로, "등을"을 "활동 등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"로, "제8조의 자료조사"를 "조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'소방용수·지리조사'란"을 "'소방용수시설·지리조사'란"으로, "소방용수에"를 "소방용수시설에"로 한다.

제3조 전단 중 "인명구조·구급활동"을 "인명구조·구급 활동"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"준용하여야"를 "준용해야"로 한다.

제4조 앞의 "제2장 소방활동 자료조사계획"을 삭제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)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5조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 및 제8조의 대상 및 횟수 등과 소방용수시설·지리조사 계획을 포함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1. 삭제
2. 삭제

3. 삭제

4. 삭제

5. 삭제

제5조제1항 중 "자료조사는"을 "자료조사(이하 "자료조사"라 한다)는"으로, "화재안전조사"를 "화재안전조사(이하 "화재안전조사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소방활동 자료조사"를 "자료조사"로, "조사대상자"를 "자료조사 대상자"로, "알려야"를 "알려야 하며 자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야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소방활동 자료조사자가 화재안전조사 등 업무를 함께"를 "화재안전조사 등의 업무와 함께 자료조사를"로 한다.

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(이하 "자료조사자"라 한다)로서의 자격을 가진다.

제7조 앞의 "제3장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실시"를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소방활동 자료조사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"를 "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에 앞서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(이하 "소방예방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활용하여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위치, 구조, 관계 설비의 현황"을 "위치 및 구조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소방활동 자료조사"를 "자료조사"로, "무비카메라, 비디오, PDA"를 "스마트폰, 디지털카메라, 드론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

제4항을 삭제한다.

- ③ 자료조사자는 대상처의 업무(영업)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며 자료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소방활동 자료조사"를 "자료조사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관할 면적,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"중점관리대상 : "을 "중점관리대상: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3호 및 제4호의 2급,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: 2년"을 "제3호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: 3년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대상 : "을 "대상: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대한 소방활동"을 "대한"으로, "소방시설의 완공검사"를 "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"로, "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"를 "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의 대상 중 건축물의 증축, 용도변경 등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(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)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자료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별

지 제2호서식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작성해야 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중 "위치·구조·용도·피난계획·비상용승강기"를 "위치·구조·용도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2. 소방용수시설 현황(인근저수지 등 추가 용수 포함)
3.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 현황
4. 소방시설 현황(수신기, 연결송수구 위치 등)
5. 피난시설 현황(비상구, 피난용승강기 위치 등)
6. 층별 주요 용도 및 상주인원(주·야간)
7. 위험물 및 그 밖에 연소물질 위치
8. 기타 조치 필요사항

제10조의 제목 "(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)"을 "(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"작성하여야"를 "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작성·관리해야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PDA, 디지털카메라, 전자문서"를 "스마트폰, 디지털카메라, 드론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의 제목 "(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등)"을 "(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조치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"소방활동"을 "별지 제2호

서식의 소방활동"으로 한다.

-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을 발견한 자료조사자는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 부서로 통보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부서는 화재안전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- ③ 소방서장은 자료조사 결과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변동사항과 제2항의 결과를 확인하고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.

제12조 앞의 "제4장 소방용수·지리조사"를 삭제한다.

제12조의 제목 "(소방용수·지리조사 실시)"를 "(소방용수시설·지리조사 실시)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소방용수·지리조사"를 "소방용수시설·지리조사"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"정밀조사:"를 "정밀조사: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정기조사:"를 "정기조사: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수시조사:"를 "수시조사:"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"(소방용수·지리조사 결과조치)"를 "(소방용수시설·지리조사 결과조치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즉시"를 "지체 없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장애요인"을 "장애요인이"로, "확보 등"을 "확보하도록"으로 한다.

제15조 중 "2024년 7월 1일"을 "2025년 1월 1일"로, "6월 30일"을 "12월 31일"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방활동 정보카드

1. 건물개황

① 관리번호		② 주 용 도		③ 상 호	
④ 소재지		⑤ 소방대상물과의 거 리		소방서 km 119안전센터 km(관할) 119안전센터(119지역대) km(최단)	
⑥ 소방용수시설		호 km / 호 km / 호 km / 호 km /			
⑦ 건물구조		조 지하 층 / 지상 층 / 동			
		연면적 m ² / 바닥면적 m ²			
		◦ 특별피난계단수 : ◦ 피난계단수 : ◦ 일반계단수 : ◦ 옥외계단수 : ◦ 승강기(비상) : ◦ 승강기(일반) :			
⑧ 관 계 인 등	소 유 자	성 명 : / 연락처 :			
	관 리 자	성 명 : / 연락처 :			
	소방안전관리자	성 명 : / 연락처 :			
	위험물안전관리자	성 명 : / 연락처 :			
⑨ 위 험 물 시 설 등	구분	시 설 명 (제조소 구분, 류별 등)	품 명	수 량	
	위험물 시설				
	가스취급 현황				
	특수 가연물				
	기 타				
⑩ 층 별 현 황	구분 층 별	용 도	면적	소방시설 설치현황	기타

2. 동별 위치도, 사진 및 층별 평면도

- ①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건물까지의 동선이 포함된 위치도, 건물 사진(정면, 측면, 후면) 확인
- ② 건축도면 등을 활용하여 층별 소방시설, 피난시설, 위험물 위치 등 확인

⑪ 동별 위치도, 사진 및 층별 평면도
(건축도면 활용)

3. 정보카드 작성(수정) 및 자료조사자

[illegible]

[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 기입요령]

(1) 관리번호

대상명의 첫 글자가 『가, 나, 다, . . . 순』에 의하여 『가』의 경우 1-100, 『나』의 경우 101-200과 같이 여유번호 두고 부여

(2) 주용도

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대상물의 주 용도를 기재

(5) 소방대상물과의 거리

소방서, 관할 119안전센터, 최단거리 119안전센터(119지역대)와의 거리를 기재

(6) 소방용수시설

소방대상물 주변의 소방용수시설의 관리번호 및 거리를 기재(필요시 저수지 등 추가)

(7) 건물구조

건축물대장 등 확인하여 구조 및 면적 등을 기재

(8) 관계인 등

- 소유자 :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
- 관리자 : 소유자로부터 관리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
- 소방안전관리자, 위험물안전관리자 :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자로서 유사시 즉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

(9) 위험물시설 등

해당 건물 내 설치된 위험물 시설, 가스취급(대형 LPG탱크 등), 특수 가연물 취급 사항을 기록(설치위치, 수량 등을 기재)

(10) 층별 현황

- 용도 : 해당 층의 주 용도를 기록(예시 : 병실, 노래방, 주거시설 등)
- 면적 :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 후 해당 층의 바닥면적을 기록
- 소방시설 설치현황 : 해당 층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기재

(예시 : 옥내소화전, 피난기구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기재)

(11) 동별 위치도, 사진 및 층별 평면도

-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건물까지의 동선이 포함된 위치도, 건물 사진(정면, 측면, 후면) 정보를 작성·관리
- 건축도면 등을 활용하여 층별 소방시설, 피난시설, 위험물 위치 등 확인

(12) 작성자

-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 주요내용과 작성자의 이름을 기록

소방활동 자료조사서

1. 일반현황

대상명			위 치			전 화	
소유자		관리자		소방안전 관리자		위험물 안전 관리자	
주용도							
건 물 구 조	조 연면적	지하 m²	층 /	지상 층 /	동		
특이사항							

2. 조사사항

구 분	자료조사 내용
소방대상물과의 거 리	본서 km / 119안전센터 km(관할) / 119안전센터(119지역대) km(최단거리)
소방용수시설 현 황	호 km / 호 km / 호 km / 호 km /
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 현황	
소방시설 현황 (수신기, 연결송수구 위치)	
피난시설 현황 (비상구, 피난용승강기 위치 등)	
층별 주요 용도 및 상주인원(주·야간)	

구 분	자료조사 내용
위험물 및 그 밖에 연소물질 위치	
기타 조치필요 사항	
소방활동 정보카드 수정 · 입력여부	입력일자 : 입력자 :

※ 결재자는 정보카드에 자료조사 실시 내용의 수정 · 반영 여부를 확인 후 결재

20 년 월 일

조 사 자	소속	계급	성명	(서명 또는 인)
		계급	성명	(서명 또는 인)

[소방활동 자료조사서 내용 기입요령]

1. 일반현황 (10개 항목)

(1) 대상명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(2) 위치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(3) 전화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(4) 소유자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(5) 관리자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(6) 소방안전관리자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(7) 위험물안전관리자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(8) 주용도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(9) 건물구조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(10) 특이사항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▶ 자료조사서 ▶ 신규등록
→ ‘특이사항’ 항목에 직접 입력

○ 입력사항

- 수신반 위치, 방재실 위치
- 소방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중요사항 기재(하단 8개의 조사사항 중 조사자의 판단에 의함)

2. 조사사항 (8개 항목)

(1) 소방대상물과의 거리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▶ 자료조사서 ▶ 신규등록
→ ‘소방대상물과의 거리’ 항목에 직접 입력

○ 입력방법

- 지도 앱의 차종 설정에서 "4종-3축 대형화물차"로 변경 후 대형차량 운행 가능 출동로를 확인하여 거리 확인 및 입력

(2) 소방용수시설 현황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‘훈련/수리’ 항목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○ 입력방법

- 소방대상물과 인접한 소방용수시설 입력(현장대원 출동지원시스템 ‘소방용수’ 활용하여 위치 및 수리번호 확인)

(3)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 현황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▶ 자료조사서 ▶ 신규등록

→ ‘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 현황’ 항목에 직접 입력

○ 입력사항

- 소방기본법 제22조(소방대의 긴급통행)에 따라 화재시 주출동로 외 사용하지 않는 논(밭), 개인 도로 등의 통행 가능 유무
- 소방차 진입 일반도로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유무 및 위치
- 각 소방차량의 특성상 도로진입이 불가하고 소방활동 시 운영 불가한 차량은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
- 출동로 및 출동 차량 활용 유무를 조사 당시의 상황을 판단으로 작성
- 건물 정면을 기준으로 360도 확인[전면, 후면, 좌측면, 우측면]하여 출입이 가능한 건물의 모든 출입구의 현황을 위치와 함께 작성

○ 작성예시

- 소방대상물 전면은 왕복 2차로이며 후면은 건물이 인접하여 소방차량의 접근은 전면의 도로로만 가능함
- 소방대상물로 접근하는 도로의 양쪽은 경계석이 있고, 보도블록 위에 상업용 광고판이 다수 있어 소방차량 긴급통행이 어려움
- 일반도로를 이용하여 소방대상물에 접근 시 도로 양 옆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있음
- 건물 정면 중앙과 후면 중앙에 출입구가 각각 있어 양쪽으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임

(4) 소방시설 현황(수신기, 연결송수구 위치)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▶ 자료조사서 ▶ 신규등록

→ ‘소방시설 현황(수신기, 연결송수구 위치)’ 항목에 직접 입력

○ 입력사항

- 소방대상물의 수신기가 있는 위치를 층수를 포함하여 작성
- 구획된 방재실에 수신기가 있다면 방재실 입구 비밀번호 추가 작성
- 옥외 송수구가 부설된 경우 연결송수구 설비의 종류와 특징을 작성
- 옥내소화전 송수구와 스프링클러송수구(고·저층 구분)의 송수구를 구별하여 확인(스프링클러 연결송수구는 고층과 저층을 구분하는 기준 층수 추가 작성)

○ 작성예시

- 해당 건물 지하 1층 방재실(중앙 엘리베이터 왼쪽에 방재실 있음, 방재실 비밀번호 : #4587#)에 수신기가 위치함
- 45층 높이의 공동주택 건물로 201동 1,2라인 좌측에 연결송수구가 있어 각 층별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설비(고층부 23층부터 해당) 활용이 가능

(5) 피난시설 현황(비상구, 피난용승강기 위치 등)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▶ 자료조사서 ▶ 신규등록

→ ‘피난시설 현황(비상구, 피난용승강기 위치 등)’
항목에 직접 입력

○ 입력사항

- 비상용 승강기,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정상 작동 여부 확인(일반 승용 승강기와 구별)
- 그 외 피난시설의 위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 되어 있는 피난 기구의 종류 항목 확인(소방예방정보시스템의 ‘층 소방시설’ 탭 활용)

○ 작성예시

- 40층 이상의 공동주택 건물로 □□위치에 피난용 승강기가 있음
- 해당 대상물은 숙박시설로 비상용 승강기(□□에 위치)와 특별피난계단(건물 출입구 기준 우측 카운터 옆)이 있음

(6) 층별 주요 용도 및 상주인원(주·야간)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▶ 자료조사서 ▶ 신규등록

→ ‘층별 주요 용도 및 상주인원(주·야간)’ 항목에
직접 입력

○ 입력사항

- 소방대상물의 층별 주요 용도를 고려하여 주간·야간 상주 인원 작성

○ 작성예시

- 해당 대상물은 복합건축물로 5층은 요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입소자가 최대 30명(요양원 침대 수 기준), 주간 근무자 7명, 야간 근무자 5명이 근무하고 있음
- 해당 대상물의 1층은 마트로 운영되는 상업 시설로 9시~22시까지 운영하고 종업원은 평균 20명이 근무하며 22시 이후로는 근무하지 않음.
(마트에 방문하는 유동인구의 정확한 평균 인원수는 파악 어려움)

(7) 위험물 및 그 밖에 연소물질 위치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▶ 자료조사서 ▶ 신규등록

→ ‘위험물 및 그 밖에 연소물질 위치’ 항목에 직접 입력

○ 입력사항

- [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]에 따라 취급하는 위험물과 위험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확인(소방예방정보시스템의 ‘위험물’ 탭 활용)
- 조사시 급격한 연소확대(폭발위험 포함)가 발생할 수 있는 연소물질이 있는 장소는 추가 작성 가능

○ 작성예시

- 에틸알코올[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]을 공장 A동 1층 옥내저장소에 보관하고 있음

(8) 기타 조치 필요 사항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▶ 자료조사서 ▶ 신규등록

→ '기타 조치 필요사항' 항목에 직접 입력

○ 입력사항

- 위 7가지의 조사사항 외에도 조사자의 판단으로 추가로 작성이 필요한 사항 입력
- 위에서 작성한 7가지의 조사사항을 토대로 소방대상물의 주용도에 따라 인명구조, 화재진압, 수원 확보 방안 등 집중하여야 할 부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 가능
-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교육한 내용 등을 자유롭게 작성

○ 작성예시

- 해당 소방대상물은 지상 35층의 아파트인 공동주택건물로 화재 발생시 □□에 있는 연결송수구를 활용하여 수원을 확보하고 각 층에 있는 옥내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진압이 가능하며 건물 중앙에 위치한 피난용 승강기의 활용이 가능함
- 소방안전관리자 □□□에게 화재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유무 확인 및 관리하도록 고지함(날짜 : '24.9.20. 14시)

(9) 소방활동 정보카드 수정 · 입력 여부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으로 입력 일자와 입력자 반영
되어 저장됨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1장 총칙</u>	<u><삭 제></u>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·진압 및 인명구조·구급 활동 등 <u>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와</u>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<u>소방용수·지리조사</u> 등의 기준을 정함을 <u>그 목적</u> 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</u> ----- ----- <u>소방용수시설·지리조사</u> ----- <u>목적</u> ----- -----.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-.
1. “소방활동 자료조사”란 <u>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의 경계·진압 및 인명구조·구급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8조의 자료조사</u> 를 말한다.	1. ----- <u>소방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- <u>활동 등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</u> ----- <u>조사</u> -----.
2. “ <u>소방용수·지리조사</u> ”란 「소방기본법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른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안내도로, 지리 및 소방출동로와 <u>소방용수에</u> 대한 조사활동을 말한다.	2. “ <u>소방용수시설·지리조사</u> ”란 ----- ----- ----- ----- <u>소방용수시설에</u> ----- -----.
제3조(적용범위) 화재의 경계, 진	제3조(적용범위) -----

압 및 인명구조·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「행정조사기본법」의 기본원칙·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.

제2장 소방활동 자료조사계획

제4조(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)

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 및 소방용수·지리조사 계획(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소방용수·지리조사 카드 정비, 관리 포함)
2. 소방력 확보(인력, 장비, 용수, 소방시설) 및 상황별 배치·운용 계획(주요 취약대상 진압작전도 포함)
3. 도상연습 및 훈련 실시 계획
4.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지 소방훈련 및 진압계획
5. 인명구조·구급활동에 대한 사전준비 및 훈련계획 등

--- 인명구조·구급 활동 ----

-----.

--- 준용해야 -----.

<삭 제>

제4조(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)

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5조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 및 제8조의 대상 및 횟수 등과 소방용수시설·지리조사 계획을 포함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1. 삭제
2. 삭제
3. 삭제
4. 삭제
5. 삭제

제5조(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) ①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, 같은 법 제37조의 소방훈련 및 제37조제3항의 지도·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 병행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자료조사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별도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협의하고 24시간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한다.

③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야 한다.

제6조(자료조사자의 자격) ① 119 안전센터·119구조대 또는 119지역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.

② 소방활동 자료조사자가 화재안전조사 등 업무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

제5조(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) ① ----- 자료조사(이하 “자료조사”라 한다)는 ----- 화재안전조사(이하 “화재안전조사”라 한다)-----

-----.

② ----- 자료조사-----
----- 자료조사 대상자-----
-- 알려야 하며 자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야 ----.

<삭 제>

제6조(자료조사자의 자격)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(이하 “자료조사자”라 한다)로서의 자격을 가진다.

② 화재안전조사 등의 업무와 함께 자료조사를 -----

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제3장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실시

제7조(소방활동 자료조사 방법)

①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, 구조, 관계설비의 현황

3. (생략)

②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상훈련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상처의 위치, 구조, 설비 현황 등을 정보화매체(무비카메라, 비디오, PDA 등)로 촬영할 수 있다.

③ 자료조사팀은 소방활동 자료조사로 인하여 대상처의 업무(영업)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소방훈련과 병행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펌프차 1대를 포함하여 당번근무자 2명 이

---.

<삭 제>

제7조(소방활동 자료조사 방법)

① 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에 앞서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
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3항의
전산시스템(이하 “소방예방정
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활용하
여 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위치 및
구조

3. (현행과 같음)

② 자료조사-----

-----스마트폰, 디지털카메
라, 드론 -----.

③ 자료조사자는 대상처의 업무
(영업)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
며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
<삭 제>

상으로 자료조사팀을 구성하여
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
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소방차
량 및 인원수를 조정하여 구성
할 수 있다.

제8조(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) ①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<단서 신설>

1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,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,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특급,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,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: 연 1회 이상
2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3호 및 제4호의 2급,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: 2년에 1회

제8조(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) ① 자료조사-----

-----. 다만, 관할
면적,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
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
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달리 정
할 수 있다.

1. -----

- 중점 관리대상: -----
--
2. -----

- 제3호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
상물: 3년-----

이상

3. 제1호·제2호 이외의 특정소
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
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
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
되는 대상 : 필요시

② 제1항의 대상 중 신축 건축
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
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4조
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
(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
를 포함한다)를 받고 건축물의
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
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9조(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)

①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할
경우에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
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-

3. -----

-- 대상: -----

② -----
--- 대한 -----

-----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
서-----
----- 발급한 날부터 6
0일 이내에 실시해야 -----
-----.

③ 제1항의 대상 중 건축물의
증축, 용도변경 등에 따라 별지
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변
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
완공검사증명서(감리결과보고
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)
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
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
제9조(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)

① 자료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
사항을 고려하여 자료조사를 실
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
활동 자료조사서를 소방예방정
보시스템상에 작성해야 한다.

1.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
위치 · 구조 · 용도 · 피난계획
· 비상용승강기 등에 관한 사
항
2.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 안
의 위험물이나 그 밖에 연소
물질의 특성에 관한 사항
3. 옥외에 송수구가 부설된 소
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의 구
조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
4. 소방용수시설의 기준, 소방대
의 배치 및 중계 송수에 관한
사항
5. 소방대의 긴급 통행에 관한
사항
6.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
대한 소방활동구역, 강제처분
및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
7. 재난위험이 있는 지역(건축
물 포함) 및 출동로 등 위험요
인
8. 소방차 부서, 옥내소화전 점
령, 건물진입, 인명구조, 주변
위험요소 및 연소 확대 여부
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연소방지 및 인명구
조에 관한 사항

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
1. -----
위치 · 구조 · 용도 -----

--
2. 소방용수시설 현황(인근저수
지 등 추가 용수 포함)
3.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
입구 현황
4. 소방시설 현황(수신기, 연결
송수구 위치 등)
5. 피난시설 현황(비상구, 피난
용승강기 위치 등)
6. 층별 주요 용도 및 상주인원
(주 · 야간)
7. 위험물 및 그 밖에 연소물질
위치
8. 기타 조치 필요사항

<삭 제>

<삭 제>

법」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지정·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점검결과 및 위험등급 등 각종 정보를 소방활동 정보카드에 첨부하여 소방활동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제10조(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) ① 자료조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보화매체(PDA, 디지털카메라, 전자문서 등)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소방활동 정보카드는 전자문서 유통에 의한 방법으로 작성·관리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 조치 등) ① 소방서장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·정리하여 화재진압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0조(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) ① -----

-----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작성·관리해야 -----
--. -----스마트폰, 디지털카메라, 드론 -----
-----.

<삭 제>

제11조(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 조치 등)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을 발견한 자료조사자는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 부서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화재안

<신 설>

②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「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행한다.

제4장 소방용수·지리조사

제12조(소방용수·지리조사 실시)

「소방기본법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·지리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한다.

1. 정밀조사 : 연 2회(해빙기, 동절기)
2. 정기조사 : 월 1회 이상
3. 수시조사 : 도로공사를 한 경우,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, 취약지역 등
4. (생략)

전조사 등 관련부서는 화재안전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③ 소방서장은 자료조사 결과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변동 사항과 제2항의 결과를 확인하고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.

④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활동

-----.

<삭 제>

제12조(소방용수시설·지리조사 실시) -----

----- 소방용수시설·지리조사-----
-----.

1. 정밀조사: -----

2. 정기조사: -----
3. 수시조사: 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소방용수·지리조사 결과 조치) ① 소방서장은 소방용수·지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소방용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요인 발생한 경우에는 우회도로 확보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5조(재검토기한) 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소방용수시설·지리조사 결과조치) <삭 제>

② ----- 지체 없이 -----.

③ ----- 장애요인이 ----- 확보 하도록 -----.

제15조(재검토기한) -----

2025년 1월 1일 -----
----- 12월 31 일-----

-----.

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·진압 및 인명구조·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·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소방활동 자료조사”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의 경계·진압 및 인명구조·구급 활동 등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.
2. “소방용수시설·지리조사”란 「소방기본법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른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관내도로, 지리 및 소방출동로와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화재의 경계, 진압 및 인명구조·구급 활동 등 소방활동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「행정조사기본법」의 기본원칙·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.

제4조(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)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5조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 및 제8조의 대상 및 횟수 등과 소방용수시설·지리조사 계획을 포함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1. 삭제
2. 삭제
3. 삭제

4. 삭제

5. 삭제

제5조(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) ① 소방활동 자료조사(이하 “자료조사”라 한다)는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(이하 “화재안전조사”라 한다), 같은 법 제37조의 소방훈련 및 제37조제3항의 지도·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 병행실시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자료조사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별도로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료조사 대상자와 협의하고 24시간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며 자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야 한다.

③ 삭제

제6조(자료조사자의 자격)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(이하 “자료조사자”라 한다)로서의 자격을 가진다.

② 화재안전조사 등의 업무와 함께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제7조(소방활동 자료조사 방법) ① 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에 앞서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(이하 “소방예방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현황
2.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 및 구조
3.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활동 시 필요한 자료

②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상훈련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상처의 위치, 구조, 설비 현황 등을 정보화매체(스마트폰, 디지털카메라, 드론 등)로 촬영할 수 있다.

③ 자료조사자는 대상처의 업무(영업)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며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
④ 삭제

제8조(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) ①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다

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관할 면적,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,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,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특급,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,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: 연 1회 이상
2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3호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: 3년에 1회 이상
3. 제1호·제2호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: 필요시

② 제1항의 대상 중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료조사는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(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)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.

③ 제1항의 대상 중 건축물의 증축, 용도변경 등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(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)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료

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
제9조(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) ① 자료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

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작성해야 한다.

1.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·구조·용도 등에 관한 사항
2. 소방용수시설 현황(인근저수지 등 추가 용수 포함)
3.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 현황
4. 소방시설 현황(수신기, 연결송수구 위치 등)
5. 피난시설 현황(비상구, 피난용승강기 위치 등)
6. 층별 주요 용도 및 상주인원(주·야간)
7. 위험물 및 그 밖에 연소물질 위치
8. 기타 조치 필요사항
9. 삭제

② 삭제

제10조(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) ① 자료조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

에 따라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작성·관리해야 한다. 이 경우 정보화매체(스마트폰, 디지털카메라, 드론 등)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삭제

제11조(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조치 등)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자료

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을 발견한 자료조사자는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 부서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부서는 화재안전조사 실시

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③ 소방서장은 자료조사 결과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변동사항과 제2항의 결과를 확인하고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.

④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행한다.

제12조(소방용수시설 · 지리조사 실시) 「소방기본법 시행규칙」 제7조에

따른 소방용수시설 · 지리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한다.

1. 정밀조사: 연 2회(해빙기, 동절기)
2. 정기조사: 월 1회 이상
3. 수시조사: 도로공사를 한 경우,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, 취약지역 등
4. 조사방법은 「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」 제22조에 따른다.

제13조(소방용수시설 · 지리조사 결과조치) ① 삭제

② 소방용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회도로 확보하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4조(세부시행기준의 위임) 이 훈령에서 정하거나 소방청장이 따로 통보

한 기준 이외에 필요한 세부시행 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정할 수 있다.

제15조(재검토기한) 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방활동 정보카드

1. 건 물 개 황

① 관 리 번 호		② 주 용 도		③ 상 호	
④ 소재지		⑤ 소방대상물과의 거 리		소방서 km 119안전센터 km(관할) 119안전센터(119지역대) km(최단)	
⑥ 소방용수시설		호 km / 호 km / 호 km / 호 km /			
⑦ 건물구조		조 지하 층 / 지상 층 / 동			
		연면적 m² / 바닥면적 m²			
		◦ 특별피난계단수 : ◦ 피난계단수 : ◦ 일반계단수 : ◦ 옥외계단수 : ◦ 승강기(비상) : ◦ 승강기(일반) :			
⑧ 관 계 인 등	소 유 자	성 명 : / 연락처 :			
	관 리 자	성 명 : / 연락처 :			
	소방안전관리자	성 명 : / 연락처 :			
	위험물안전관리자	성 명 : / 연락처 :			
⑨ 위 험 물 시 설 등	구분	시 설 명 (제조소 구분, 류별 등)	품 명	수 량	
	위험물 시설				
	가스취급 현황				
	특수 가연물				
	기 타				
⑩ 층 별 현 황	구분 층 별	용 도	면적	소방시설 설치현황	기타

2. 동별 위치도, 사진 및 층별 평면도

- ①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건물까지의 동선이 포함된 위치도, 건물 사진(정면, 측면, 후면) 확인
- ② 건축도면 등을 활용하여 층별 소방시설, 피난시설, 위험물 위치 등 확인

⑪ 동별 위치도, 사진 및 층별 평면도

(건축도면 활용)

3. 정보카드 작성(수정) 및 자료조사자

[illegible]

[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 기입요령]

(1) 관리번호

대상명의 첫 글자가 『가, 나, 다, . . . 순』에 의하여 『가』의 경우 1-100, 『나』의 경우 101-200과 같이 여유번호 두고 부여

(2) 주용도

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대상물의 주 용도를 기재

(5) 소방대상물과의 거리

소방서, 관할 119안전센터, 최단거리 119안전센터(119지역대)와의 거리를 기재

(6) 소방용수시설

소방대상물 주변의 소방용수시설의 관리번호 및 거리를 기재(필요시 저수지 등 추가)

(7) 건물구조

건축물대장 등 확인하여 구조 및 면적 등을 기재

(8) 관계인 등

- 소유자 :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
- 관리자 : 소유자로부터 관리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
- 소방안전관리자, 위험물안전관리자 :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자로서 유사시 즉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

(9) 위험물시설 등

해당 건물 내 설치된 위험물 시설, 가스취급(대형 LPG탱크 등), 특수 가연물 취급 사항을 기록(설치위치, 수량 등을 기재)

(10) 층별 현황

- 용도 : 해당 층의 주 용도를 기록(예시 : 병실, 노래방, 주거시설 등)
- 면적 :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 후 해당 층의 바닥면적을 기록
- 소방시설 설치현황 : 해당 층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기재

(예시 : 옥내소화전, 피난기구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기재)

(11) 동별 위치도, 사진 및 층별 평면도

-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건물까지의 동선이 포함된 위치도, 건물 사진(정면, 측면, 후면) 정보를 작성·관리
- 건축도면 등을 활용하여 층별 소방시설, 피난시설, 위험물 위치 등 확인

(12) 작성자

-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 주요내용과 작성자의 이름을 기록

소방활동 자료조사서

1. 일반현황

대상명			위 치			전 화	
소유자		관리자		소방안전 관리자		위험물안전 관리자	
주용도							
건 물 구 조	조 연면적	지하 m²	층 / 바닥면적	지상 m²	층 /	동	
특이사항							

2. 조사사항

구 분	자료조사 내용
소방대상물과의 거 리	본서 km / 119안전센터 km(관할) / 119안전센터(119지역대) km(최단거리)
소방용수시설 현 황	호 km / 호 km / 호 km / 호 km /
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 현황	
소방시설 현황 (수신기, 연결송수구 위치)	
피난시설 현황 (비상구, 피난용승강기 위치 등)	
층별 주요 용도 및 상주인원(주·야간)	

구 분	자료조사 내용
위험물 및 그 밖에 연소물질 위치	
기타 조치필요 사항	
소방활동 정보카드 수정 · 입력여부	입력일자 : 입력자 :

※ 결재자는 정보카드에 자료조사 실시 내용의 수정 · 반영 여부를 확인 후 결재

20 년 월 일

조 사 자	소속	계급	성명	(서명 또는 인)
		계급	성명	(서명 또는 인)

[소방활동 자료조사서 내용 기입요령]

1. 일반현황 (10개 항목)

(1) 대상명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(2) 위치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(3) 전화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(4) 소유자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(5) 관리자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(6) 소방안전관리자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(7) 위험물안전관리자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(8) 주용도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(9) 건물구조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(10) 특이사항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▶ 자료조사서 ▶ 신규등록
→ ‘특이사항’ 항목에 직접 입력

○ 입력사항

- 수신반 위치, 방재실 위치
- 소방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중요사항 기재(하단 8개의 조사사항 중 조사자의 판단에 의함)

2. 조사사항 (8개 항목)

(1) 소방대상물과의 거리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▶ 자료조사서 ▶ 신규등록
→ ‘소방대상물과의 거리’ 항목에 직접 입력

○ 입력방법

- 지도 앱의 차종 설정에서 “4종-3축 대형화물차”로 변경 후 대형차량 운행 가능 출동로를 확인하여 거리 확인 및 입력

(2) 소방용수시설 현황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→ ‘훈련/수리’ 항목 시스템 입력 시 자동 반영되어 표출

○ 입력방법

- 소방대상물과 인접한 소방용수시설 입력(현장대원 출동지원시스템 ‘소방용수’ 활용하여 위치 및 수리번호 확인)

(3)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 현황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▶ 자료조사서 ▶ 신규등록

→ ‘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 현황’ 항목에 직접 입력

○ 입력사항

- 소방기본법 제22조(소방대의 긴급통행)에 따라 화재시 주출동로 외 사용하지 않는 논(밭), 개인 도로 등의 통행 가능 유무
- 소방차 진입 일반도로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유무 및 위치
- 각 소방차량의 특성상 도로진입이 불가하고 소방활동 시 운영 불가한 차량은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
- 출동로 및 출동 차량 활용 유무를 조사 당시의 상황을 판단으로 작성
- 건물 정면을 기준으로 360도 확인[전면, 후면, 좌측면, 우측면]하여 출입이 가능한 건물의 모든 출입구의 현황을 위치와 함께 작성

○ 작성예시

- 소방대상물 전면은 왕복 2차로이며 후면은 건물이 인접하여 소방차량의 접근은 전면의 도로로만 가능함
- 소방대상물로 접근하는 도로의 양쪽은 경계석이 있고, 보도블록 위에 상업용 광고판이 다수 있어 소방차량 긴급통행이 어려움
- 일반도로를 이용하여 소방대상물에 접근 시 도로 양 옆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있음
- 건물 정면 중앙과 후면 중앙에 출입구가 각각 있어 양쪽으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임

(4) 소방시설 현황(수신기, 연결송수구 위치)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▶ 자료조사서 ▶ 신규등록

→ ‘소방시설 현황(수신기, 연결송수구 위치)’ 항목에 직접 입력

○ 입력사항

- 소방대상물의 수신기가 있는 위치를 층수를 포함하여 작성
- 구획된 방재실에 수신기가 있다면 방재실 입구 비밀번호 추가 작성
- 옥외 송수구가 부설된 경우 연결송수구 설비의 종류와 특징을 작성
- 옥내소화전 송수구와 스프링클러송수구(고·저층 구분)의 송수구를 구별하여 확인(스프링클러 연결송수구는 고층과 저층을 구분하는 기준 층수 추가 작성)

○ 작성예시

- 해당 건물 지하 1층 방재실(중앙 엘리베이터 왼쪽에 방재실 있음, 방재실 비밀번호 : #4587#)에 수신기가 위치함
- 45층 높이의 공동주택 건물로 201동 1,2라인 좌측에 연결송수구가 있어 각 층별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설비(고층부 23층부터 해당) 활용이 가능

(5) 피난시설 현황(비상구, 피난용승강기 위치 등)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▶ 자료조사서 ▶ 신규등록

→ ‘피난시설 현황(비상구, 피난용승강기 위치 등)’
항목에 직접 입력

○ 입력사항

- 비상용 승강기,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정상 작동 여부 확인(일반 승용 승강기와 구별)
- 그 외 피난시설의 위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 되어 있는 피난 기구의 종류 항목 확인(소방예방정보시스템의 ‘층 소방시설’ 탭 활용)

○ 작성예시

- 40층 이상의 공동주택 건물로 □□위치에 피난용 승강기가 있음
- 해당 대상물은 숙박시설로 비상용 승강기(□□에 위치)와 특별피난계단(건물 출입구 기준 우측 카운터 옆)이 있음

(6) 층별 주요 용도 및 상주인원(주·야간)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▶ 자료조사서 ▶ 신규등록

→ ‘층별 주요 용도 및 상주인원(주·야간)’ 항목에
직접 입력

○ 입력사항

- 소방대상물의 층별 주요 용도를 고려하여 주간·야간 상주 인원 작성

○ 작성예시

- 해당 대상물은 복합건축물로 5층은 요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입소자가 최대 30명(요양원 침대 수 기준), 주간 근무자 7명, 야간 근무자 5명이 근무하고 있음
- 해당 대상물의 1층은 마트로 운영되는 상업 시설로 9시~22시까지 운영 하고 종업원은 평균 20명이 근무하며 22시 이후로는 근무하지 않음.
(마트에 방문하는 유동인구의 정확한 평균 인원수는 파악 어려움)

(7) 위험물 및 그 밖에 연소물질 위치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▶ 자료조사서 ▶ 신규등록

→ ‘위험물 및 그 밖에 연소물질 위치’ 항목에 직접 입력

○ 입력사항

- [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]에 따라 취급하는 위험물과 위험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확인(소방예방정보시스템의 ‘위험물’ 탭 활용)
- 조사시 급격한 연소확대(폭발위험 포함)가 발생할 수 있는 연소물질이 있는 장소는 추가 작성 가능

○ 작성예시

- 에틸알코올[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]을 공장 A동 1층 옥내저장소에 보관하고 있음

(8) 기타 조치 필요 사항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▶ 자료조사서 ▶ 신규등록

→ ‘기타 조치 필요사항’ 항목에 직접 입력

○ 입력사항

- 위 7가지의 조사사항 외에도 조사자의 판단으로 추가로 작성이 필요한 사항 입력
- 위에서 작성한 7가지의 조사사항을 토대로 소방대상물의 주용도에 따라 인명구조, 화재진압, 수원 확보 방안 등 집중하여야 할 부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 가능
-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교육한 내용 등을 자유롭게 작성

○ 작성예시

- 해당 소방대상물은 지상 35층의 아파트인 공동주택건물로 화재 발생시 □□에 있는 연결송수구를 활용하여 수원을 확보하고 각 층에 있는 옥내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진압이 가능하며 건물 중앙에 위치한 피난용 승강기의 활용이 가능함
- 소방안전관리자 □□□에게 화재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유무 확인 및 관리하도록 고지함(날짜 : '24.9.20. 14시)

(9) 소방활동 정보카드 수정 · 입력 여부

[소방예방정보시스템] ▶ 특정소방대상물관리 ▶ 특정소방대상물 조회/변경

→ 시스템 입력 시 자동으로 입력 일자와 입력자 반영
되어 저장됨